

#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518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출자 : 파주시장

## ☐ 제정이유

우리시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와 시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 시킴으로서 시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코자함

## ☐ 주요골자

- 가.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은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사용함( 조례안 제3조 )
- 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30일이전에 시장에게  
사용신청( 조례안 4조 )
- 다. 등록상표의 사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
- 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의  
제반조치 강구( 조례안 제15조 )

##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와 시에서 개발한 포장 디자인(이하“등록상표”라 한다)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시킴으로서 시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표”라 함은 시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통일로가는길목, 도토미, 축산물 도형등)를 말하며 별표1과 같다.
2. “포장 디자인”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농축특산물 포장 디자인을 말하며 별표2와 같다.

제3조(등록상표의 사용) ①등록상표는 시 또는 시민등이 사용하며 사용 대상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로 한다.

②등록상표 사용신청요령, 대상자 및 품목의 선정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필요에 따라 농축특산물 이외에도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등록상표의 신청)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상표의 사용심사)① 제4조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심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상표 사용신청 품목중 다음 각호의1에 대하여는 사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특산물.

2. 정부수매 2등급이상의 파주산 벼로서 지역농협에서 직접 가공판매는 쌀 포장재

제6조(심사위원회)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상표운영관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농축특산물 생산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등록상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② 등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사용승인된 등록상표의 취소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등록상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등록상표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유통담당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중 파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무단사용자의조치) 시 등록상표중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제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의장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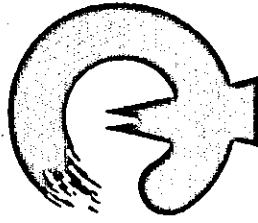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등 록 상 표 목 록(제2조관련)

| 등록명                       | 분 류 | 등록번호    | 종류  | 사 용 대 상                                             |
|---------------------------|-----|---------|-----|-----------------------------------------------------|
| 계                         |     | 5종류     | 46종 |                                                     |
| 통일로가는길목                   | 29류 | 0450945 | 10종 | 콩, 가공된인삼,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달걀 |
| 통일로가는길목                   | 30류 | 0450943 | 10종 | 쌀, 메주, 강정, 꿀, 물엿, 봉밀, 떡간장, 된장, 고추가루                 |
| 통일로가는길목                   | 31류 | 0450944 | 10종 | 감자, 부추, 오이, 인삼, 토마토, 단미사료, 배, 사과, 참외, 포도            |
| 도 토 미                     | 29류 | 0454002 | 6종  |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오리알, 육포                         |
| 축산물 도형<br>(소+돼지+닭<br>+달걀) | 29류 | 0454003 | 10종 |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달걀, 오리알, 육포  |

( 별표1 )



## 상 표 등 록 증

등 록 제 0450945 호

출원 번호 제 1998-0020020 호  
등록일 1999년 0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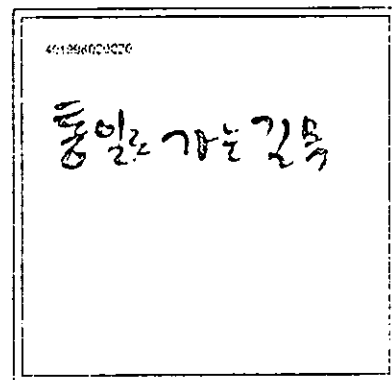
상표권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상표를 사용한 상품 및 구분

제 29 류

콩 등 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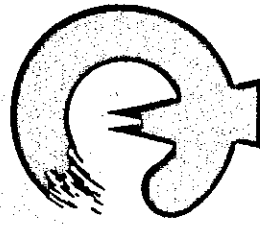
위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1999년 07월 14일

특 허 청



( 별표1 )



## 상 표 등 록 중

등 록 제 0450943 호

출원 번호 제 1998-0020021 호  
등록일 1999년 0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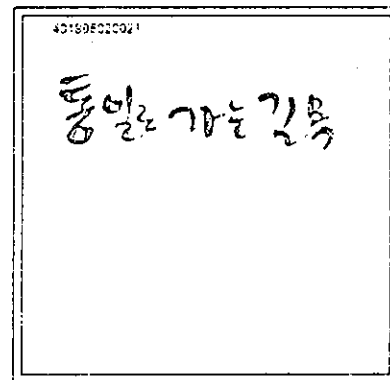
상표권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30 류

쌀 등 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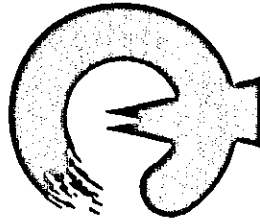
위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1999년 07월 14일

특 허 청



( 별표1 )



## 상 표 등 록 중

등 록 제 0450944 호

출원 번호 제 1998-0020022 호  
등록일 1999년 0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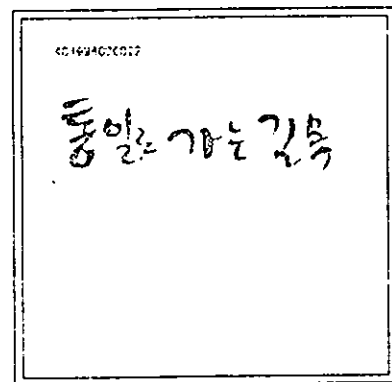
상표권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31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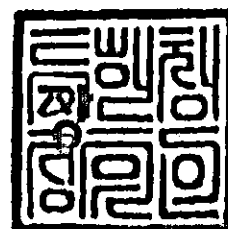
감자 등 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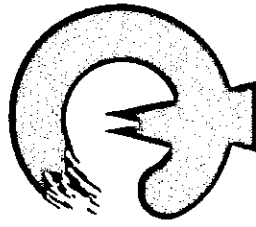
위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함.

1999년 07월 14일

특 허 청



( 별표1 )



## 상 표 등 록 증

등 록 제 0454002 호

|    |    |                  |
|----|----|------------------|
| 출원 | 번호 | 제 1998-0020025 호 |
| 출원 | 일  | 1998년 08월 07일    |
| 등록 | 일  | 1999년 09월 01일    |

상표권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아농동 215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29 류

40199802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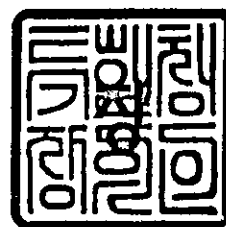
돼지고기등 10건

도 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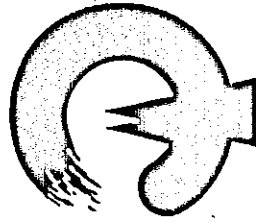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999년 09월 01일

특 허 청



( 별표1 )



## 상 표 등 록 증

등 록 제 0454003 호

출원 번호 제 1998-0020023 호  
출원 일 1998년 08월 07일  
등록 일 1999년 09월 01일

상표권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 29 류

40199802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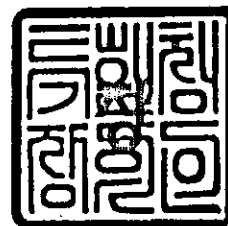
돼지고기등 5건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999년 09월 01일

특 허 청



[ 별표 2 ]

농축특산물 포장디자인 목록(제2조관련)

포장 디자인 품목 : 9 종

- 과 채 류 ( 2종 ) : 참외, 오이
- 버 섯 류 ( 2종 ) :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 화 훼 류 ( 2종 ) : 장미, 백합
- 엽 채 류 ( 1종 ) : 부추
- 과 일 류 ( 2종 ) : 포도, 배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산물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 품목  | 산지    | 등급 | 크기 | 중량 | 수량   | 생산지역 | 주 소 | 전화번호 |
|-----|-------|----|----|----|------|------|-----|------|
| 오 이 | 경기 파주 | 특  | 상  | 보통 | 15kg | 100개 |     |      |
| 특대  | 대     | 중  | 소  |    |      |      |     |      |

http://www.paju.kyonggi.kr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15kg

농업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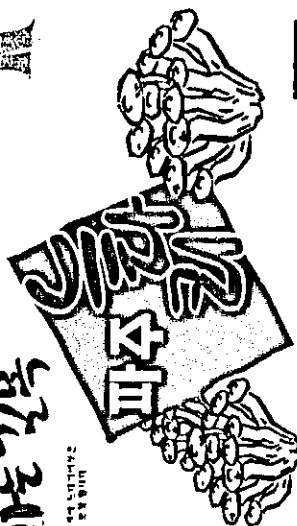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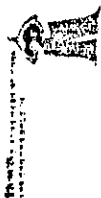
15kg

농업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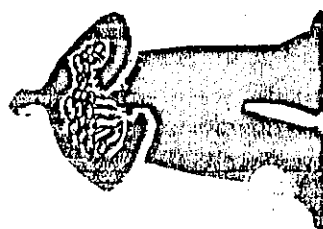


523230

[illegible]

**2Kg**

अथ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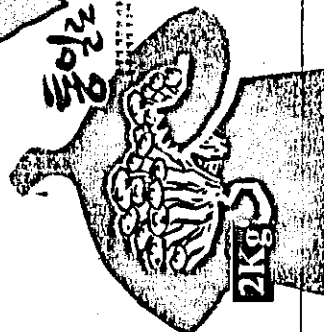


|             |        |             |         |                  |         |         |
|-------------|--------|-------------|---------|------------------|---------|---------|
| 발<br>행<br>처 | 산<br>지 | 출<br>판<br>사 | 주<br>제  | 영<br>산<br>지<br>명 | 주<br>소  | 전<br>화  |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http://www.psju.kyonggi.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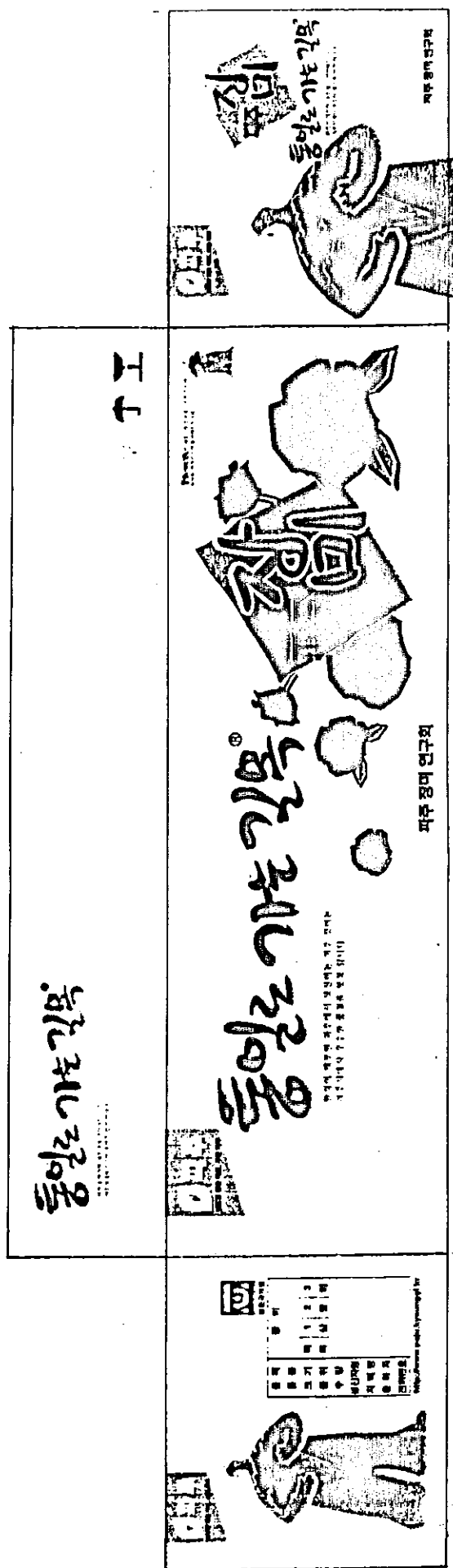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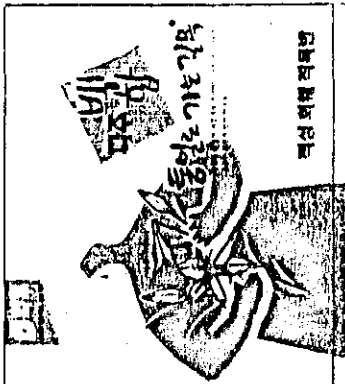
花乳石



2Kg

**ਧਨੁ ਮੰਮ ਕੁੰਤ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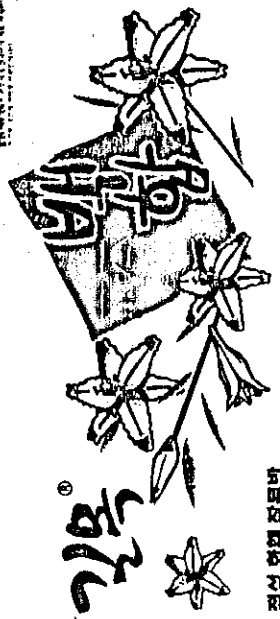






**동양사상**

동양사상



이 책은 동양사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동양사상

동양사상



